

## 상징아카이빙\*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이 영 남\*\*

1. 대통령기록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
2. 기록담론의 새로운 서사전략을 전망하며
3. 현행 대통령기록의 특징과 한계
4. 대통령기록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
5. 대통령기록의 재구성과 수집전략
6. 문화의 차원에서 보는 기록

\* 이 논문은 대통령기록관의 “2012년 대통령기록관 지정과제” 연구지원금을 받아 작성되었음.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초빙교수. 주요 논저 : 『푸코에게 역사의 문법을 배우다』 푸른역사, 2007; 「공동체 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제31호, 2012.  
▪투고일 : 2013년 9월 21일 ▪최초심사일 : 2013년 9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5일.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록화 전략을 다루었다. 1999년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아카이빙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공적 행위 프레임이었다. 대통령기록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공적 행위 프레임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런 프레임을 보다 강조한 측면마저 있다. 그러나 공적행위 프레임이 갖는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적 행위 프레임으로 국한해서 기록화전략을 구성할 경우 오히려 기록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적 행위 프레임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 상징프레임을 다뤄보았다.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락에 방법론을 끼는 것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적 행위 프레임의 아래에는 양적 방법론이 깔려 있는데 비해 상징아카이빙의 아래에는 질적 방법론이 깔려 있다. 양적 방법론과는 달리 질적 방법론은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을 모색하는 방법론이다. 기록학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의 경우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질적 방법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질적 방법론과 상징 프레임의 구도에서 구체적인 기록화 전략도 모색해보았다. 예를 들어 기록의 범위를 기록현장기술서, 내러티브기록 등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전략을 위해 외국의 유사사례를 검토하며 몇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록담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제 기록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요컨대, 이제 우리는 문화의 차원에서 기록을 보아야 한다.

주제어 : 대통령기록, 대통령기록관, 노무현대통령, 공적 행위, 패러다임, 서술전략, 담론, 현장기술서, 내러티브, 내러티브기록, 기술, 공동체 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상징, 문화인류학, 기어즈, 코헨, 아키비스트 윤리강령, 윤리, 기록통제표, 기록물분류표, 효율, 통치심성, 질적 연구방법론, 양적 연구방법론, 경험, 이야기, 문화

## 1. 대통령기록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

어느 날인가 대통령기록관 정리기술 작업장에 들어갔다. 마침 제16대 노무현대통령 기록의 정리기술 작업이 한창이었다. 책상을 탁탁 치는 소리, 기록상자가 바다에 놓이는 둔탁한 소리, 기록이 밖으로 실어가는 수레 바퀴의 빠거덕 거리는 소리, 복도를 지나는 누군가의 커다란 전화 목소리 등이 어우러져서인지 작업장 분위기는 혼잡한 느낌마저 주었다. 기록이 아니라 마치 기록 외부의 다양한 소리들이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로 아카이빙 되는 것만 같았다.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리기술 담당 연구관과 이런 저런 일을 의논하다가 한 장의 대통령기록서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내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을 나가 일하다가 임기 말에 노무현대통령기록 이관작업까지 마무리하고 복귀한 것을 알았던 그 연구관은, 아마도 기록이 인수된 후에 어떻게 정리되고 기술되었는지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저것은 무엇일까? 전에 근무했던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계층기술된 기록기술서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상념에 빠져들었다. ‘뭔가 사라져버렸어, 분명히 무언가가 증발되어 버린 것이 틀림없어.’

분명히 대통령기록은 대량의 기록이고 이런 대량 기록에는 집합기술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대량의 대통령기록에는 ISAD(G) 같은 표준방식이 최선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작업방식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노무현대통령 기록의 정리기술 작업은 2012년 말 현재, 공공기록관리 분야에서 일획을 긋는 대단한 작업이었다. 여전히 우리는 공공기관의 대량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기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보면 이런 평가가 무리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공기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대통령기록을 국제표준 방식으로 정리기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이다. 앞으로 대통령기록을 보려는 사람들은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획기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 장의 정리기술서가 내가 던져준 당혹감은 무엇이었을까? 아카이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록은 체계적으로 정리기술 되어 통제되어야 하고, 기록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서비스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작업의 전제로 깔려 있으며 나도 이런 전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깔끔하게 정리된 기술서를 보는 순간 몇 년 동안 가슴 깊숙이 저장되어 있던 뭔가가 사라져버리는 상실감도 느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생각할수록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기록은 남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뭔가가 서서히 배제되기 시작한다는 불안함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떠날 줄 몰랐다. 당시에는 언표화하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은 점차 확고해졌다. 이런 의문도 들었다. 100년 후에 누군가는 저 기술서를 통해 대통령기록에 접근할 것이다. 과연 그때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무엇이며, 놓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증발시킨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왜 안타까워해야 할까? 이 글을 관류하는 문제의식은 이런 의문에서 나왔다.

이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특수하고 일회적인 체험은 아닐 것이다. 인

류학자 기어즈는 자신이 수행한 40여 년 동안의 탐구를 성찰하면서 내부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인류학자들도 또한 변화한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는 학문분야와 그 학문분야에 존재하는 지적인 환경이 근거를 두는 도덕적 기반도 변화하여 왔다.”<sup>1)</sup> 기어즈의 말처럼, 외적인 환경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나 활동가가 속해 있는 분야도 변화한다. 1999년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 외부환경도 많이 바뀌었지만 내부 환경도 급격히 바뀌었다. 새로운 사람들이 대거 들어 오면서 인적 구성이 바뀌었다. 또한 기록과 연관된 것들이 많아지면서 기록학 연구분야도 넓어졌고 도덕적 기반도 변화했다. 여기서 도덕적 기반은 일종의 ‘아키비스트 집단윤리’에 보다 가깝고 이것은 변화해가는 상황에 맞춰 진화해왔을 것이다. 그때 대통령기록관 정리기술 작업장 체험이 일회적이거나 특수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것도 이처럼 변화한 맥락들이 자락에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99년 공공기록법 제정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외적 환경이 변했다. 사물로서 기록은 그대로 이더라도 기록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다면, 새로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기록담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새로운 기록담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하나의 실천이다.

## 2. 기록담론의 새로운 서사전략을 전망하며

이 글에서 시도하는 서사전략은 서사를 만드는 이가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다시 구성해나가는 데에 구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한다. 나아가 특정한 이론적 자장 안에서 자기완결적인 설명으로 채워가는 방

---

1) D. Jean Clandinin · F. Michael Connelly, *Narrative Inquiry*, 1999, 소경희 외 옮김,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학사, 2006.

식이 아니라, 일정한 개방성과 허구성을 상상력으로 표용해나가는 것을 함의한다. 이런 방식의 서사전략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아무개라는 특정한 서사가가 구사하는 화법, 또는 문체와 내러티브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원칙에 대한 느슨한 접근으로 향한 것이다.<sup>2)</sup> 이런 점에서 이 글의 서사전략은 통상적인 기록학 연구논문의 서사전략과는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차이 자체가 이 글이 목표로 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완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실험일 수 있다면, 그런 일정한 한계에서도 전체적인 서술체계나 플롯의 차원뿐만 아니라, 용어와 문장의 차원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실천해보기로 했다. 나는 이 글을 구성해나가면서 기본적으로는 후기 구조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었고, 방법론상으로는 질적 방법론에서, 개별 담론으로는 특히 문학이나 인류학적 공동체연구에서 새로운 서사전략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다음의 셋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경험을 중시했다. 말하자면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경험’을 필수불가결한 기록맥락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록학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카이브 종사자의 기록경험이나 기록생산 당사자의 기록경험 등을 개인의 주관으로 보고 그 적용에 소극적인 편이다. 예를 들어 사물로서 기록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기록을 아카이빙한다든가, 글을 쓸 때 기록경험을 에피소드가 아니라 연구방향을 좌우할 정도의 비중으로 섞어 쓴다든가, 작업현장에서는 국제표준과 대등하게 기록경험을 작업매뉴얼로 삼는다든가 하는 것이 별로 시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관과 객관의 대립은 질적 연구방법론이 활발해지면서 그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객관적인 것 못지않게 주관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한층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다루는 주관은 주관과 주관, 주관과 사물 등이 섞이면서 나타나는 상호주관성

2) 백승중, 『금서, 시대를 읽다』, 산치림, 2012.

(간주관성)이나 하나의 주관관을 초월하여 다수의 주관관에 공통적인 것을 찾으려는 집단적 주관성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질적 연구방법론에서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구성된 실체를 전제로 작업을 한다.<sup>3)</sup> 물론 기록학 분야에서 이런 사실이 전혀 얘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천하고 실험해서 아카이브 특유의 주관성을 어떻게 담론화 하느냐이다. 이 글에서 경험을 각주나 본문의 직접적 인용으로 처리되는 방식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사유의 기원이자 지향점으로 삼으려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경험이 언어가 되지 않으면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어떤 특정 집단의 체험이 시대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으로 바뀌려면 시대가 쓰는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한동안 기록은 ‘사물로서 실체주의’에 빠져 있다가, 전자기록의 등장으로 기록에 실체가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경험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철저히 유동적인데, 그러나 언표화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정된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험을 아카이빙 하는 것은 결국 언어를 아카이빙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공직자의 행위를 아카이빙 하는 것은 그 행위의 최종 형태인 문서를 아카이빙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만약 경험을 어떻게 아카이빙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이 물음은 다음의 물음으로 치환되어야 한다. “언어를 어떻게 아카이빙 할 것인가?”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실천은 1999년 이후 제도권에서 지속되었던 “제도실천”이 아니라, “언어실천”은 아닐까? 그 동안 실천해왔던 제도실천이 문제였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긍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도실천도 일정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나왔다면, 언어실천도 새롭게 전개되는 새로운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나올 것이다.

3) 윤택림, 『문화와 역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개정판』, 아르케, 2013.

법/제도/표준으로 시작해(‘기원’) 법/제도/표준으로 귀결되던(‘텔로스’) 제도실천이 하나의 날개라면, 새로운 기원과 새로운 텔로스를 갖는 언어실천은 또 하나의 날개가 될 것이다.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난다. 언어는 새로운 아카이빙 영역이다. 새롭게 물어야 한다. 이런 물음과 새로운 곳에서의 아카이빙 방식은 이 글의 4장과 5장에서, 상징아카이빙 방법론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아키비스트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언어실천의 일환으로 상징아카이빙을 실천해보았다.

둘째, 은유를 중시했다. 은유(metaphor)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은유적이지만 은유는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행위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은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적이기보다는 특수한 언어의 문제로 시적 상상력과 수사적 풍부성의 도구이다. 은유는 삶을 일정한 방향과 방식으로 이끌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삶의 진실에 닿는다.<sup>4)</sup>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중시하는 학술논문에서는 은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후기구조주의 사유에 의지해 인간을 이해하려는 담론에서는 은유가 오히려 진실에 이르는 길이라 보며, 철학과 언어학의 전통적 주류로 간주되는 ‘객관주의’와 다른 사유를 하기 위해 은유를 중시한다. 이것은 아마도 은유는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객관주의가 놓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는 우리 삶과 언어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록도, 그리고 기록담론도 사람을 위한 기록이고 사람을 위한 담론은 아닐까? 데이터를 조직해서 어떤 사실을 확정하는 방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카이브 분야에서도 은유를 매개로 기록을 삶으로 수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카이브 분야에서는 아카이브(건물)의 접근성을 말하면서 교통 같은 요소들을 이야기한다. 물론 이 말은 맞지만 미시적으로 생각해보자.

---

4) George Lakoff ·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2003, 노양진 · 나익주 옮김, 『삶으로의 은유』, 박이정, 2006.



과연, 시민들이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비해 기록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교통의 불편함과 덜 알려졌기 때문일까? 또는 도서관과 달리 경비원과 자물쇠로 상징되는 보안등급에 겁먹어서인가? 아닐 것 같다. 그보다는 책이나 유물을 다루는 글에 비해서 기록을 다루는 글이 ‘문학적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기록이 우리 삶에 보다 가깝게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쉽게 책을 접하는 이유가 도서관으로 가는 교통이 편해서라기보다는 서평이나 함께 읽기 등의 독특한 책문화에서 비롯된다. 독서에 관한 글에는 은유가 많고 그런 은유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인간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다. 은유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이런 다양성이 실제 다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기록에는 책이나 유물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을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책이든 기록이든, 거기에 은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상상력이 커지고 가능성이 커진다. 은유의 힘은 상상력에 있을 것이다. 기록을 말하는 글에서 은유가 빈번하게 출현할수록 ‘기록 접근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는 은유를 중심에 두고 글을 구성하는 전략을 취했다.

질적 방법론에서 구사하는 글은 종전의 양적 방법론에서 구사하는 글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논문방식은 양적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 세부적인 전술은 각주달기, 논증하기, 논증이 끝난 후 사실상 최종확정하기 등이다. 그러나 질적 방법론은 이와 달리 기본적으로 대안적 글쓰기를 지향한다. 질적 방법론에서 지향하는 대안적 글쓰기의 몇 가지 공통된 기술요소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는 연구자의 경험과 해석을 근거로 하되 서술은 이야기 형태로 진행한다, 누구나 내용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쓴다, 학술논문 밖에서 읽혀야 한다, 상징되는 독자가 연구자뿐만 일반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자의 경험에 기초한 사실적이고 반성적인 그리고 감동적인 기술이라는 심층적 기술을 해야 한다.<sup>5)</sup> 이 글은 기본적으로 질적 방법론이 취하는

방식에 닿아 있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의도적인 오독을 의식적으로 행해보았다는 점일 것 같다. 오독을 하면서 각주로 상징되는 것들을 제거해나가면서 ‘각주의 전통적 계보학’에 비판적인 시선을 던졌다. 이런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면서 ‘오독의 계보학’을 실천해나가려고 했다. 이럴 때 기록(담론)의 다양성도 보장될 것이다. 기록관리가 필요로 하는 표준과 다른 목소리, 다른 방식도 표준에 대한 의도적인 오독에서 나온다. 오독의 계보학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상상하는 작업이므로 기록의 다양성을 실천할 수 있는 전술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이 글의 서사전략에 대해 말해보았다. 새로운 서사전략을 다소는 장황하게 말한 것은 1999년 이후 제도권에서 지속되었던 기록현실이 아닌, 새롭게 변화한 현실에는 새로운 기록담론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록담론에는 새로운 서사전략이 필요하며, 새로운 서사전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술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기언어로 재편되지 않은 사물은 새로운 사물이 아니다, 자기프레임으로 다시 찍지 않은 풍경은 자기 삶을 구성하는 풍경이 될 수 없다.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도까지 가지 못함을 알면서도, 이 글이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된 것들을 기록의 영역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효과를 내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 3. 현행 대통령기록의 특징과 한계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틀로 정의되는데, 심리학, 물리학,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배가 무척 고평 때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음식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늘 걸던 거리

---

5) 윤택림, 앞의 글, 2013.

이지만 주변에는 온통 식당으로 가득 차 보이는데, 이는 갑자기 거리에 식당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 전에는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였지만 일단 음식프레임에 갇히면 거리가 온통 식당으로 뒤덮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프레임이 변한 것이다. 물리학에서는 물리현상에 접근하는 특정한 관점을 기준틀(reference of frame)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미디어에서도 특정한 프레임에 입각해 사회의 흐름을 조율한다. 사진작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진작가가 광활한 대지를 찍을 때 어떤 프레임에 맞춰 찍느냐에 따라 풍경의 실체는 달라진다. 결국 프레임은 그 전에는 경계도 없고 실체도 없었던 특정한 대상을 실체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sup>6)</sup> 이런 프레임은 아카이브 분야에도 유용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기록프레임’을 설정할 경우, 기록을 다시 구성하면서 구성된 실재로서 기록을 다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먼저, 현행 대통령기록의 특징과 한계를 ‘기록프레임’의 관점으로 살펴본다.

## 1) 공적행위 프레임

대통령기록법은 대통령기록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을 말한다.

법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지만,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률은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프레임에 입각해 대통령기록을

6) 최인철, 『나를 바꾸는 지혜 프레임』, 21세기북스, 2007.

정의한다는 점이다. 대통령기록법은 현행 대통령기록체계의 근간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화해보면, 결국 대통령기록체계를 관류하는 줄거리이자 기록화전략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이런 법률적 줄거리는 대통령기록 아카이빙의 요소마다 작용하지만, 여기에서는 수집대상의 맥락에서 한정해서 살펴본다. 과연, 대통령 직무수행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프레임하에서 기록화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일까? 세 가지 구분점으로 살펴본다.

첫째, 논리적 구분에서 본다면, 사적행위와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공적행위가 기록화 대상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로 정하고 있다. 기록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수반의 직무수행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지만 국가원수의 직무수행은 그렇지 않다. 전자라면 결재, 지시, 회의 같은 행정적 행위로 정할 수 있지만 후자는 어떨까? 현재 대통령기록에는 ‘대통령편지’가 있다. 대통령편지가 기록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학생, 시민 등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행위는 연애편지 같은 사적인 행위와 구별되는 공적인 행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조선시대 왕을 연상시키는’ 국가원수라는 대통령의 지위일 것이다. 국가원수의 직무수행은 추상적으로는 쉽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통령기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대통령 기록관리 분야에서 보면 애매모호하다. 법률 제정과과정에서 이런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개인기록물 개념이다.

법 2조 3항에는 대통령 개인기록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정하는 개인기록은 대통령기록이긴 하나 ‘관리대상이나

수집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기록'을 의미한다. 구분기준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거나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행위'이다. 얼핏 생각하면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는데 그것을 공무수행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어떤 부처의 장관이라면 이런 의문은 당연하고 그런 사적인 행위가 기록화 대상인가 하는 논의조차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장관이 가족과 모여 밥을 먹는 것을 두고 공무수행인가 의문을 던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결혼한 자식을 청와대로 불러 저녁을 먹고 그때 대통령 가족사진이 생산되었다면 이것을 기록화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논의가 될 수 있기에 대통령 개인기록이라는 범주가 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 이유 없이 개인기록을 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국가원수라는 지위, 그리고 공무수행이라는 프레임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행위를 사적인 행위와 공적인 행위로 구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둘째, 시간적 구분에서 본다면, 재임 중 대통령 행위가 기록화 대상이다. 현재 법률조항에는 '재임 중'이라는 문구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굳이 임기 중이라고 문구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란 대통령선거를 거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헌법이 정한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기록법은 '임기 중 대통령'의 공무수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대통령당선인, 대통령,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세분화시켜 놓은 것은 '임기 중'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법 제2조 1호가목에는 대통령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들 '재임 중인 대통령들'의 직무수행이 기록화 대상이다. 물론 법 26조에는 대통령 개인기록의 수집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다.

셋째, 공간적 구분에서 본다면, 대통령 행위는 대통령 및 대통령기구(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 인수위원회)의 행위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기구는 여타 헌법기관, 정부 각 부처 등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대통령기록법의 이런 공간적 구분은 출처주의에 의해 입각해 있다. 출처주의란 한마디로 같은 출처(기관)의 기록은 다른 출처의 그것과 섞이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 제정 당시 이런 출처주의가 강조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일정한 역사적 경험 때문이었다. 대통령기록법 이전에는 ‘대통령 재가문서’가 대통령기록으로 부처구분 없이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관리방식은 해당 재가문서의 구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알 수 있는 기록과 함께 관리되지 않아 결과만 있지 진행과정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록은 있는데 맥락과 흐름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법은 출처주의에 의거했고, 이에 따라 정부부처에서 생산한 대통령재가문서는 대통령기록 범위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이런 출처주의에 따라, 대통령행위는 대통령 및 대통령기구의 행위로 한정되었다.

이상으로 대통령기록법이 정하는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수집대상을 ‘공적행위’라는 프레임으로 살펴보았다.

## 2) 공적행위 프레임의 한계

공적행위 프레임에는 일정한 역사성이 있다. 식민지, 분단과 전쟁, 독재의 긴 터널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대통령기록이 없는 한국현대사를 생각해보자. 나아가, 겨우 몇 년 전인 2007년에야 대통령기록법이 제정되었고 이제 겨우 단 한 번 제대로 된 대통령기록 이관경험이 있는 현실도 염두에 둔다면, 공적행위의 기록화라는 프레임은 그 자체로는 정당했다. 투명행정, 책임행정이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 공적행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명제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진대 하물며 대통령 직무야말로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리체계를 포함하는 전체 공공기록관리체계는 기본적으

로 공적행위 프레임에 입각해 있다고 본다.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록법은 196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던 ‘사무관리규정’을 일신하는 획기적인 법률로 평가된다. 그러나 프레임의 측면에서는 공적행위 프레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1998년 당시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록법의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을 구현하는 것이었다.<sup>7)</sup>

2004년~2007년에는 국가기록혁신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흐름에서 2006년에 전면개정된 공공기록법은 ‘공적기록의 철저한 관리’를 표방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공무수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밖에 있으나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공공기록물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을 큰 의의로 삼고 있다.<sup>8)</sup> 이처럼 공적행위가 공공기관의 공무수행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공적행위의 프레임을 오히려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시기인 2007년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법은 공적행위를 대통령까지 확대했다. 법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최고책임자까지 예외 없이 공적행위를 의무화시킨 것이다.<sup>9)</sup>

결국 대통령기록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공기록 분야를 지배하는 기록프레임은 공적행위 프레임이며 이는 점차 강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적행위 프레임’이 더 이상 시대의 변화를 담지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적행위 프레임의 한계는 무엇보다도 거대담론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거대담론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크고 작고의 차원

7) 김선영,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기록보존제도의 확립」, 『기록보존』 제12호, 1999, 33-42쪽.

8) 국가기록원, 『국가기록백서』, 2007;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해설집』, 2007; 국가기록원, 『기록인』, 2007.

9)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 백서』, 2010.

이 아니라 성격과 역할의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 한다. 거대담론은 말하자면 ‘단 하나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다른 논의를 빨아들여 없애버리거나 주변화 시킨다. 이런 점이 거대담론이 갖는 문제점이다. 다양성과 차이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거대담론이 맞지 않다는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양하고 새로운 차원의 아카이브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미의 기록관리분야에서는 이미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sup>10)</sup>

현행 대통령기록법 제2조를 보면, 대통령기록의 종류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 물론 대통령기록법에는 몇 개의 기록유형이 등장한다. 대통령기록물, 대통령상징물, 대통령선물, 개인기록물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상징물과 대통령선물은 기록물이 아닌 물품이라는 점에서만 구분이 되고, 개인기록은 대통령 직무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다. 어떤 기록유형도 ‘독립된 프레임에 따른 독립된 기록유형이라는 개념적 구분’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기록관은 2008년 2월까지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을 대대적으로 이관 받았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지속적인 수집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증유도, 구술채록 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구술채록의 경우, ‘주요 정책에 대한 결락기록의 보완’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정책에 대한 결락은 공적행위가 제대로 기록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마땅히 기록으로 남겨졌어야 하지만 문서행위로 할 수 없었던 측면도 있고,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아예 기록이 전무하거나 부실하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락논리’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일정한 역사성이 있다.

구술기록은 행위의 기록화가 아니라 기억의 기록화이다. 기억의 기

---

10) 윤은하,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1, 77-94쪽.



기록화는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억,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으로 출발했다. 그 자체의 고유한 흐름이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간다면 공적행위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흐름이 있는 것이다. 별도의 흐름이니 독립된 프레임으로 수용했어야 했지만, 공적행위의 기록화라는 거대담론이 주도하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라도 구술기록을 남기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구술을 채록하는 근거가 공적행위 프레임에 있다면, 결국 결락논리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록화 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구술채록 대상이나 구술내용 모두 마찬가지이다. 결국, 구술기록의 주변화 효과는 공적행위 프레임이 거대담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화된 구술기록도 문제이지만, 후술할 기록들은 경우에는 아예 등장조차 못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다른 종류의 대통령기록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공적행위 프레임이 아닌 다른 프레임에 입각한 기록은 없는 것일까? 거대담론인 공적행위 프레임, 또는 국지적인 대통령 공적행위의 기록화 방식은 아무리 최선이라도 결국 '7%'만 기록화 하는데에 그칠 것이다. 여기에서 '7%'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전체 총량 중 '7%'를 기록화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는 상징적 수량화로써의 의미가 더 크다. 왜 이런 상징적 수량화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4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다시 논의로 돌아와서 '7% 기록화'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이제는 공적 행위 프레임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 중의 하나로 위치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새삼스럽게 더 큰 프레임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대등한 기록 프레임'이 등장해서 상호공존 할 것이다. 이런 공존이 대통령기록을 균형 있게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 본다.

## 4. 대통령기록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

### 1) 상징프레임

거대담론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듯이 미시담론도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다. 푸코와 들뢰즈의 사유에서 미시적이라는 말은 ‘유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사이즈로 이해한다면 미시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미니어처가 된다. 그러나 항상 움직이고 고정시킬 수 없는 관계로 이해를 한다면 미시적이라는 것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다른 모든 것들을 주변화 시키는 그것에 대한, 미니어처가 될 수 없다. 미시적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차원이며,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고정시킬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sup>11)</sup>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전문지식과 함께 짜여지면서 사람을 표준화시킨다. 표준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사람의 몸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된다. 우리가 보통 ‘자연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특수한 사회적 현상이다. 사람의 몸은 사회적 의미에 의해 쥘여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통적인 걷는 방법은 ‘난바’인데, 이것은 살짝 땅에 스치듯 걷는 걸음이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의 근대교육을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은 팔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허리를 곧추 세우고 어깨를 편 상태로 걷게 되었다. 이것은 군대행진 걸음인데 오늘날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적인 맥락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세기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난바걸음이었다.<sup>12)</sup> 그렇다면, 과연 BC 1세기의 자연스러움은 뭘까?

11) 허경, 「푸코와 근대성」, 『푸른역사 아카데미 푸코 강의록』, 2012.

12) 内田樹, 寝ながら學べる構造主義, 2002, 서경덕 옮김,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갈라파고스, 2010.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라 여기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본성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후기구조주의 사유는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 경험 같은 것들도 당대의 문화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다. 이 글에서 ‘문화’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 글의 맥락에서는 자연적이거나 본성적이지 않은 것을 총칭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으로 구분될 때의 좁은 의미의 문화가 아니다. ‘문화’는 인간의 의식과 실천적 행동을 포괄한다.<sup>13)</sup> 사람이 무엇이 어떻게 아픈지조차 ‘문화적’이며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100년 전에는 아프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을 오늘날에는 아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병이 실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의학담론이 구성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사회적 구성방식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극히 내밀한 사적인 것이라 여기는 것들도 ‘사회적인 맥락’을 가질 것이다. 결국 사람에게 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철학적 사유를 기록인식론적 측면으로 좁혀본다. 기록에 접근할 때 거시적인가 미시적인가 하는 것은 결국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접근을 하느냐, 맥락적인 접근을 하느냐 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것은 국가중심적 실제적 사고였다. 기록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가중심적 실제적 사고는 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질서를 상정한 채 공동체를 여기에 복속시켜 주변화 시킨다. 국가중심적 실제적 사고로는 공동체가 독립된 존재로 인정될 수 없다. 메인 이슈를 빛나게 하는 사이드 이슈로 취급되는데, 어떻게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는가? 미시적인 것들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접근하는 방식이 실제적인 것보다는 맥락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실체라 여기는 것들도 사실은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인정할 때 기록 구성의 미시적 측면이 가능해진다.

13) 백승중, 앞의 글, 2012.

기록구성의 미시적 측면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기록분야에는 전자기록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비트스트림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물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록이라 말하고 장기보존하려면 메타데이터, 보존포맷 등의 맥락이 있어야 한다. 전자기록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사회적 맥락(전문지식 등)이지 전자데이터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요컨대, 전자기록은 실체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의 사회적 구성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려면, 인류학적 공동체 연구의 상징개념이 유용하다.

서구의 공동체 연구경향에서 주목할 점은 1980~90년대에 인류학적 방법론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로써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대한 연구, 공동체 내부의 경계나 다른 공동체와의 경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특히 영국의 인류학자인 코헨(Anthony Cohen)은 공동체의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경계를 다루면서 사람들이 주로 상징적인 과정을 통해 경계짓기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람들은 상징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한다.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면 공동체는 상징적 구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코헨 이전의 상징주의에서 상징은 의례와 의식으로 좁혀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코헨은 상징을 의례와 의식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보았다. 코헨은 생활에서 직관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까지 상징으로 보았다.<sup>14)</sup>

요약하면, 상징에는 객체적 사물로서 상징, 의례와 의식으로서 상징, 그리고 언어로서 상징이 있다. 이런 구도에서 보면 현재 대통령기록은 첫 번째 객체로서 사물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기록법에는 ‘대통령상징물’이 대통령기록의 한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상징물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이나 행정박물”로 정의되고

14) 윤은하,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 메트와 세미나 발표문, 2011.

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봉황문양이나 무궁화문양이 새겨진 물품·행정박물이 대통령상징물이 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미니어처로 재현되어 있다. 봉황문양이 새겨진 대통령집무실 책상이 가장 중심에서 대통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시 의도는 한국 사람들에게 봉황문양이 대통령을 표상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전제에서 나왔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맞다.

그러나 코헨의 상징개념으로 폭넓게 접근하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3층집을 지어야 하는데 1층만 지어놓고 다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품이나 행정박물 말고는 대통령상징은 없는 것일까? 부처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처를 상징하는 것 중에는 ‘염화미소’라는 얼굴표정이 있다. 만약 부처상징을 기록화한다면 얼굴표정일 것이고, 염화미소의 기록이 있어야 우리는 부처와 가섭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의 정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처의 공식적인 설법도 중요하지만, 부처와 사람들이 공유했던 정서, 의미, 느낌 등의 상징적 경험도 중요하다. 염화미소라는 상징이 갖는 함의는 이런 것이다.

대통령상징의 맥락에서 보면, 노무현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은 봉황문양일까, 아니면 연설하는 모습이나 독특한 행보일까, 아니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독특한 음조와 검찰개혁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제기되었던 언어일까? 이승만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은 봉황문양일까, 한국전쟁 와중에 라디오방송에서 흘러나온 그 떨리는 음성일까? 봉황문양이 새겨진 대통령 책상만으로는 이런 사회적 맥락이나 사회적 행위를 상징할 수 없다. 반면, 사회적 행위인 언어적·경험적 상징은 그렇지 않다. 지금 말하려는 것은 시대의 분위기, 사회적 맥락을 읽기 위한 상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코헨의 상징개념은 이런 계열의 접근법에서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코헨은 커뮤니티 활동이나 생활을 전제로 하는 언어적 접근을 통해

상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상징은 단어(어휘, 숙어 등), 그리고 이들이 일정한 문법적 체계에 의해 연결된 구조(은유, 수사, 이야기, 신화, 담론)와 소리(연설, 음악, 감탄사, 발성) 등을 포괄한다. 더 나아가 경험으로부터 얻은 사유와 태도,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관련된 모든 것은 상징이거나 상징적 요소이다. 이런 코헨의 상징개념은 상징주의에서 말하는 비언어적인 의례나 의식까지 포괄한다.<sup>15)</sup>

지금까지는 공적 문서행위를 기록화 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통령기록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일정한 사회적 상황, 사회적 맥락은 물론이고 사회적 행위와 경험을 기록화 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받는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인상이 형성되는 요소 중 얘기는 단지 7%에 불과하고 한다. 대신 목소리 톤(38%)이나 몸짓(55%)이 훨씬 크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각과 청각을 포함한 몸 전체로 느끼는 정보량이 훨씬 많은 것이다. 얘기에 담긴 내용, 목소리 톤, 말의 속도, 그리고 말과 말 사이에 끼어드는 ‘7%의 침묵이나 손동작 등 수많은 요소가 개입되어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는 것이다.<sup>16)</sup>

물론 7%는 한 개인이나 두 사람 사이 대화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류학적 공동체연구에 따르면, 규모가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그리고 서로에게 완벽하게 귀속되려면 ‘7%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7% 바깥에 포진한 보다 폭넓은 것들을 수용하면서 공동체가 지속된다. 기록분야는 어떨까?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은 일정한 사회적 맥락이 존재하는 사회적 행위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7% 기록화’의 지평을 넓히는

---

15) 윤은하, 앞의 글, 2011.

16) 堀井 恵, Neuro-Linguistic Programing, 심교준 옮김, 『NLP 행복코드로 세팅하라』, 한언출판사, 2004.

방법이라 생각한다. 우선은, 인류학적 공동체연구에서 다루는 커뮤니티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비유를 들어 말한다면, 상징프레임으로 접근해서 목소리의 톤, 말의 속도와 말투, 말과 말 사이에 끼어드는 침묵, 표정과 눈빛, 눈맞춤 방식, 손동작, 제스처, 반응하는 방식, 사회적 상황, 현장의 분위기 등을 입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얘기내용(7%)은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다면, 동영상이나 녹음, 사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까? 물론 이것들이 좋은 매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체의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논의될 것도 아니다. 상징 기록화는 매체가 아니라 방법론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아카이브의 전문직 종사자(기관종사자, 학계종사자)는 바깥의 목소리나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비단 아카이브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역사가 하워드 진은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런 전문가주의가 빛고 있는 ‘7% 기록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sup>17)</sup> 인류학적 공동체연구, 심리학 연구, 민중의 역사학은 그 자체로 고유한 담론적 맥락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나 ‘커뮤니케이션’, ‘민중’같은 개념을 기록담론으로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담론의 맥락이 필요하다.

현재 기록담론은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기관의 실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나간다. 어떤 회의가 중요한지 파악해서 중요 회의록으로 남길 것을 통보한다. 기록관리기준표와 업무-기록시스템에 따라 기록이 제대로 생산-등록되었는지 알기 위해 생산현황을 뽑고 점검한다. 목록화된 기록을 인수인계한다. 정리기술서나 전자인식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통제한다. 실제의 대강이 이렇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기록에 접근하

---

17) howard zinn, "Secrecy,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Midwestern Archivist* Vol II, No.2, 1977, pp.14-27.

고 처리하는 방식은 철저히 객체적·사물적 접근방식이다. 기록을 철저히 객체화시키고 사물화 시켜서 다루는 것이다. 맥락적 접근은 아닌 것이다.

하워드 진은 앞에서 인용한 아키비스트 모임에서 기록전문가주의의 실체주의적 접근법의 한계도 명확하게 지적했다. 그는 말하기를, 어떤 시위나 집회가 있을 때 아키비스트는 그 곳에서 흐르는 역동성, 시위현장의 독특한 사회적 작용, 이런 사회작용의 고유한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그것보다는 인터뷰를 선호한다. 물론 이런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개개인의 기록은 남길 수 있겠지만 그 기록에는 역동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더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계급을 다루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맑시스트 역사가들은 노동운동가, 노동조합도 영향력 있는 노동자에 속한다. 요즘 한국사회로 좁혀보면 아마도 정규직 노동자도 영향력 있는 사람에 속할 것이다. 그래서 하워드 진은 구술프로젝트로 명성이 높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구술기록조차도 전문가주의 편견에 빛은 캐리커처라는 혹평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sup>18)</sup>

하워드 진은 시위를 예로 들면서 기록을 구성하는 세 개의 층위를 말한다. 맨 위에는 시위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의 정책기록, 그 아래에는 시위현장을 담은 경찰의 시위대응기록, 그리고 맨 아래에는 시위현장의 역동성을 알 수 있는 시위자기록. 시위자기록은 가공되지 않은 가장 원초적인 기록인데, 예를 들어 시위자들의 현장목소리, 시위현장 그 자체에서 흐르는 사회적 상호작용, 고유한 흐름과 역동성을 채록한 현장기술서 등이다.

하워드 진은 나아가 이렇게 문제를 물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당신들이 애지중지하는 기록에는 ‘시위자이야기’는 왜 없는 겁니까? ‘시위현장기술서’는 왜 없는 겁니까? 당신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에 속

---

18) Ibid, 1977.



하는 공공기관 공적행위 기록(보고서, 회의록, …)으로 기록서고를 채우고 있는데, ‘기록분야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총체’를 고작 ‘7%’에만 쏟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워드 진은 미국 중서부의 아키비스트 회합에서 당시의 어떤 흐름을 타고 짧은 시간 연설했다. 당연히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자기주장을 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체득하기 어려운 1960~70년대 미국적 맥락이 있었을 것이다. 하워드 진의 문제의식을 수용하면서 우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고서 내용은 ‘가공된 정보’이다. 공공기관이 일정한 경로를 통해 취득해서 가공한 정보들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보고서에 담아 국가정책이 형성된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가공한 정보와 대통령의 최종결재하거나 보고받은 보고서만 대통령기록으로 남는다. 공공기관이 가공하지 않은 광범위한 시민의 목소리나 생각은 대통령기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기록은 대통령 개인의 치적을 위한 기록이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골간을 보여주는 기록을 상징한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대통령기록법을 만들고 독립된 대통령기록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치적을 만세에 전한다는 내러티브에 입각해 있었다. 이런 내러티브에 따라 조정에서 벌어진 내용이나 조정의 주요 사항,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으로 남겼다. 백성의 생각이나 목소리를 만세에 남긴다는 내러티브는 없었다. 그러나 주권재민에 입각한 오늘날에서는 시민의 생각이나 목소리가 핵심적이다. 모든 것은 여기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은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그런 열망을 안은 존재이다. 이런 시대적 내러티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기록’은 지금은 다른 내러티브에 입각해 있는 것 같다.

실체적 접근법은 객체적 사물로서 기록을 특정화시키는 부조적 방식

이다. 부조적 방식은 돋보이는 것들만 배열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맥락적 접근법은 객체적 사물로서 기록이 아니라 그것이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을 다루는 총체적 방식이다. 맥락적 접근방식에 기반을 둔다면, ‘기록현장(archival field)’, ‘기록현장기술서(archival field description)’, ‘기록경험(archival experience)’, ‘내러티브기록(narrative archives)’ 등의 개념을 말할 수 있다. 기록현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어떤 기록현장기술서를 남길 것인가? 여기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다. 그냥 거리나 집회현장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하워드 진의 문제의식은 좋으나 ‘민중적 관점’보다는 ‘시민적 관점’을 표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지도 모르겠다. 다음 장에서 개념의 의미나 기록화 전략에 대해 상술한다.

요지는 이리하다. 공적행위 프레임 하에서 봉양문양이 있는 행정박물 몇 개 수집하는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상징프레임 하에서 ‘일정한 사회적 맥락이 있는 대통령 상징’을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항구적으로 기록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 코헨의 상징개념이나 하워드 진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상징개념은 무엇보다도 이런 방법론적 전망을 가지는데 유용하다.

## 2) 질적 기록연구

공적행위 프레임 아래에 양적 방법론이 있다면, 상징프레임 아래에는 질적 방법론이 있다. 인류학적 공동체연구 방법론은 질적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징프레임을 방법론적으로 다루는 것은 결국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질적 연구방법론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록연구경향이나 기록관리 역사가 대체로 양적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국지적 기록화에 머물렀다면,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이 공존함으로써 총체적인 기록화를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는 기록프레임의 측면에서 말

했다면, 여기에서는 프레임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질적 기록연구의 지평을 살펴본다.

먼저, ‘효율적 기록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록관리 역사를 개관하면서 양적 기록방법론이 역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살펴보자.

1961년~1963년 군사정부 시기에 새로운 정부공문서규정체제가 들어선다. 이 체제는 능률적 사무관리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장치였고 구체적으로는 1964년 정부문서분류표와 공문서보존기간책정기준을 도입한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기록통제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61년 당시 군사정부는 새로운 공문서체제를 공무원에게 훈련시키면서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잡았다. “전공무원에게 신공문서의 취급요령을 충분히 습득케 하고 문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으로써 행정개혁의 일단을 달성코자 함에 있다.”<sup>19)</sup> 효율적 문서관리란, 문서생산자가 정부문서분류표를 기준으로 문서에 분류번호를 기재한 후 업무처리가 종료된 문서는 파일철에 철하여 파일 캐비닛에 보관하는 방식을 골간으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sup>20)</sup>

이런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군사정부 당시 도입된 공문서체제는 이후 2004년 기록물관리기준표, 2006년 기록관리기준표가 등장할 때까지 체제가 유지되면서 ‘효율적 기록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는 대통령기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2012년 현재 대통령정리기술체제에도 효율적 기록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무질서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기록보존기관에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만들어 기록물을 분류 정리하고 기록물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구분된 요소별로 서술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19) 내각사무처에서 1961년에 제정한 문서관리규정. 재인용 : 이영남, 「1950~60년대 국가행정체계의 재편과 성격」,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05.

20) 이영남, 위의 글, 2005.

등록한다.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물은 기록보존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sup>21)</sup>

대통령정리기술서는 2007~2008년에 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대통령기록 정리기술사업이 시작되면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기술서는 29개 기술항목으로 기록을 통제하고 있다. 하위 세부항목도 있지만 항목화, 또는 양화를 통한 통제라는 원리에 입각해 있다. 결국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기록통제표’는 제도상의 변천은 있었지만 기록의 효율적 통제라는 원리는 굳건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기록통제표는 대통령정리기술서의 29개 기술항목이 시사하듯이, 일정한 갯수의 양적 항목을 설정해서 그 항목에 맞춰 기록을 통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과거정부를 부정하면서 내세운 핵심논리 가운데 하나는 정부운영의 무능력과 비효율성이었다. 또한 군정세력이 군정기에 이룩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 스스로 꼽은 것이 새로운 행정제도의 창안이었다. 새로운 사무관리체제는 국가재건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런 흐름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국가의 심층부에 효율심성이 새겨진 것이다.<sup>22)</sup> 통치심성(governmentality)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대 이후 한국현대사는 국가의 통치심성에 ‘효율’을 심은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 기록분야는 어떠했을까? 앞서 문서분류체계와 관리체계가 효율의 논리로 지속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기록의 표면 아래에는 ‘기록통제표’가 있었고, 기록의 심층부에도 효율심성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왔을까?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기록이 있어야 역사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가 만들어온 전문지식·권력은

21)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정리기술 지침(개정판)」, 2012.

22) 이영남, 앞의 글, 2005.

무엇일까? 구체적인 장치가 기록통제표였다면, 우리가 만들어온 기록이 테올로기는 효율 말고 달리 뭐라 할 게 없을 것 같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전반기에 양적 방법론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확립되었다. 이때 미국에서는 국가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대한 흐름(national efficiency movement)이 있었고, 학문분야도 이런 흐름을 수용했다. 역사학에서는 거대담론이 득세했다. 심리학과 교육학에서는 쏘니케(Thorndike)에 의해 정립된 행동관찰에 토대를 둔 교육과학의 아이디어가 대중화되었다. 그는 심리학자이었던 북미 교육연구계의 주도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쏘니케가 사회학, 경영학, 그리고 사회전 분야에서 라이스(Rice)나 테일러(Taylor)의 사회적 효율성 운동(social efficiency movement)에 심리학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쏘니케 방법론은, 데이터-검사와 통계-경쟁과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체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성적으로 순위를 매겨 경쟁하도록 한다. 쏘니케가 만든 이야기는 유일하게 타당한 이야기로 널리 인정이 되고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사회과학 탐구의 거대담론(grand narrative)라 불렸다.<sup>23)</sup> 미국의 기록학도 이런 흐름에서 비켜서지 못했다. 한국도 1960~70년대에 국가행정체계 전반에서 이런 효율심성을 수용했다.<sup>24)</sup>

이처럼 한국의 기록관리 역사는 거의 일방적으로 양적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양적 방법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양적 방법론은 문제점은 경험의 풍부함과 표현을 제거한다는 점이다. 앞서 기록은 남았지만 기록경험은 소거되었던 대통령기록관 정리기술실의 당혹스러움도, 길게 보면 이런 “양적 방법론-효율심성-효율적 기록통제표의 연쇄”와 닿아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1960년대 이래로 절대적 지

---

23) D. Jean Clandinin, *Narrative Inquiry*, 2006.

24) 이영남, 앞의 글, 2005.

위를 누렸던 기록통제표를 다른 무언가와 공존하게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기록의 표면 아래에는 새로운 기록기술서가 있어야 하고, 그 심층부에는 새로운 기록심성이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적 기록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쓴디케로 대변되는 흐름과는 반대로 교육학자 존 듀이로 대변되는 방법론이 있다. 존 듀이 방법론은 경험을 중시한다. 그래서 쓴디케와는 정반대로 아동의 경험과 교사의 경험을 토대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을 실험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성적을 매겨 순위를 매기지 않으며, 아이들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런 방식은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5)</sup>

비단 교육학뿐만 아니라 인류학이나 공동체연구에서는 경험을 중시하는 질적 방법론을 선호한다. 이유는 양적 방법론처럼 양화에 초점을 두다보면 경험의 풍부함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체험되고 말해진 이야기는 우리를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 경험에 초점을 둔 질적 연구는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관류하는 핵심은 사람들의 삶과 이러한 삶이 어떻게 구성되고 경험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지난 50여 년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말해야 한다. 후기 구조주의 사유, 존 듀이 계열의 교육학이나 인류학적 공동체연구의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새로운 기록학적 전망을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방법론은 기록을 구성하는 새로운 맥락을 제공할 것이고, 따라서 기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폭넓은 수집전략, 기록통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기록관리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아카이브 종사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다. 삶의 경험, 직업경험, 연구경험 등의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아카이브 종사자는 새로운

---

25) D. Jean Clandinin, *Narrative Inquiry*, 2006.

경험을 기록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기록을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맥락 몇 가지를 짚어 보았다. 4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안적 논의를 하기 위해 거대담론인 ‘공적행위 프레임’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징프레임’을 살펴 보았다. 경험은 언제나 행위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경험은 행위 아래에서 작동하면서 행위를 기억한다. 인류학과 공동체연구에서는 경험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 글에서는 경험 논의 가운데 특별히 ‘상징’에 주목했다. 또한, 한국의 기록관리 역사를 개관하면서 질적 기록관리의 지평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공적행위 프레임 아래에 양적 방법론이 있다면, 상징프레임 아래에는 질적 방법론이 있다. 이런 균형적 접근이 공적행위의 역사성과 필요성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을 보다 포괄적인 곳으로 재배치시키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 5. 대통령기록의 재구성과 수집전략

3장과 4장에서는 주로 기록프레임과 그 아래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했다. 여기에서는 현장에서 논의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화전략에 대해 탐구한다. 기록화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도 함께 검토했다. 외국사례로는 뉴욕 Herstory Writes’ Workshop Project(이하 Herstory Workshop)와 StoryCorps Project를 소개한다. 국내 사례로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기록정리프로젝트(이하 발바닥행동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세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상징프레임’에 기반을 두고 경험을 이야기형식으로 기록화 한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참여정부 당시 기록종사자의 대통령기록경험을 활용했으며, 인류학이나 교육학 분야의 연구경험을 이야기형식으로 만드는 사례도 참조했다.

## 1) 방문과 섞임, 모든 것의 출발점

상징아카이빙은 어딘가를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이런 방문을 문화인류학에서는 현지조사라고 하고,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현지에서 장기간 지내면서 문화기술지를 작성한다. 문화인류학자들이 구사하는 문화기술지 작성의 고전적 사례 중 하나인 ‘발리의 닭싸움’을 소개하면서 아카이빙의 핵심 방법론으로서 방문과 섞임에 대해 말해본다.

문화인류학자 기어츠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들어갔을 때는 1955년 인가, 56년이었다. 당시 발리섬에서는 닭싸움이 불법이었고 경찰의 단속이 심했다. 기어츠는 발리섬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현지 사람들이 반겨주지도 않고 상대도 해주지 않던 이방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기어츠는 어떤 닭싸움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급습했다. 공포탄인지 실제 총알인지 단속 나온 경찰들은 총을 공중으로 쏘면서 군중을 해산시켰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쳤다. 기어츠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인 교수’라는 신분은 제시하면 아무 일도 없었을 지도 모르지만, 인류학의 철칙인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 사람들 하는 대로 하라, 이 원칙에 따라 기어츠도 그들과 함께 도망쳤다. 기어츠는 ‘진짜로 혼비백산해서’ 지역사람들을 따라 부리나케 뛰었는데, 한참을 도망치다가 같이 도망치던 누군가를 따라 어떤 집으로 숨어 들어갔다. 바로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 그 집의 아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매일 하던 저녁밥 짓기처럼, 마당에 탁자를 펴고 그 위에 테이블보, 찻잔 등을 놓았던 것이다. 도망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귀한 손님이 와서 차를 마시고 있다는 모습으로 침착하게 차를 마시는 장면을 연출했다. 도망자들은 졸지에, 마치 마술과도 같이 어느 한적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한담을 나누는 동무가 되었던 것이다. 이윽고 들이닥친 경찰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상대가 백인 미국인 교수이기도 해서 대략 눈치를 챘지만 그냥 눈감고



넘어가게 되었다. 이윽고 경찰은 그 자리를 떠났다.

이 사건 이후 이방인 인류학자는 비로소 발리섬의 내부인으로 인정이 되었다. 발리 사람들이 보기에 기어츠는 비록 외부에서 온 백인이지만 발리섬에서 중요한 문화(닭싸움 현장에 있다가 그 불법적인 현장에서 함께 도망치기)에 함께 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외부인만은 아니었다. 기어츠는 이것을 두고 발리사람들과 함께 도망쳤기 때문에 어떤 질적인 경계점을 넘은 것으로 해석을 했고 비로소 자신의 문화인류학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보았다.<sup>26)</sup> 동고동락을 함께 할 때 우리는 뭔가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가 동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어츠의 해석에 수긍이 간다. 기어츠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문화인류학적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학술적으로는 평가가 완료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문화인류학에서는 기어츠의 이런 연구방법론이 고전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sup>27)</sup> 기록학 분야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문화인류학의 질적 방법론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이 글에서 주로 언급되는 실천사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상징아카이빙의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작이자 기원이 ‘방문과 섞임’이었기 때문이다. 발바닥행동 아카이빙은 현장(사무실, 거리, 장애인, 인권활동가)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사람들은 표준화된 아무런 준비 없이 방문해서 도망치는 순간부터 함께 했다. 예를 들어 기록프로젝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 모르는 후원의 밤 행사에 참여해서 후원자가 되었고 후원자를 만났다. 발바닥행동은 후원을 매우 중시하는 단체이다. 후원을 단순히 경제적 지원 등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일종의 펠로우십

---

26)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1973, 문옥표 옮김, 『문화의 해석』, 까치, 1998.

27) 윤택림, 앞의 글, 2013.

(fellowship)으로 함께한다. 실제 아카이빙 과정에서도 활동가들은 이 점을 강조했다 그 독특함을 어떻게 아카이빙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했다. 요컨대,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이 아니라 발바닥행동의 후원 문화를 함께 경험하면서 비로소 상징아카이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 2) 대통령기록의 재구성

현재 대통령기록관리체제는 공적행위 프레임 하나에만 의지해서 기록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상징프레임까지 반영해서 대통령기록을 재구성한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하나의 프레임만 있을 때는 ‘대통령기록’하나만 있겠지만, 두 개의 프레임이 공존하면 대통령기록은 두 종류의 기록으로 분화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통령 공적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상징기록”이다. 전자가 특히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행위를 기록화한 것’이라면, 후자는 ‘대통령상징을 기록화 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은 두 개의 프레임, 두 종류의 대통령기록으로 재구성된다.

### (1) 대통령 공적 기록

대통령 공적 기록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것이 없다. 현행 규정에 따라 재임 중 대통령 및 대통령기구의 공적행위를 수집한다. 현행 대통령기록법의 제2조 호에 규정된 대통령기록이 대통령 공적 기록에 해당된다. 제2조 1의2호에 규정되어 있는 선물, 대통령상징물도 대통령 공적 기록에 속한다. 선물은 개인물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무수행 중에 받은 물품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국가관리와 국가소유를 천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같은 호에 있는 대통령상징물도 통상 공공기록법에서 이관대상으로 규정한 행정박물과 같다. 예를 들어 대통령집

무실 책상은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소유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물품을 교체해야 할 때에는 이관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1의2호에 규정된 대통령선물과 대통령상징물은 개념적으로는 굳이 별도로 빼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삽입된 것은 앞서도 지적했지만, 아마도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을 상징할 수 있는 물품이 거의 없었다는 점, 대통령선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가 되었을 것이다. 기록문화가 성숙해지면 굳이 법률에 별도 항목으로 넣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대통령 공적 기록의 기록화 전략은 여기에서 따로 상술하지 않는다.

## (2) 대통령상징기록

대통령상징기록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현장, 사건, 의례, 의식, 언어 등을 대상으로 기록화하는 것이다.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퇴임 이후에도 기록화를 해야 하고 죽은 뒤에도 기록화는 지속된다. 시간의 구애받음이 없다. 범위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처럼 대통령 및 대통령기구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하면서 아카이브 종사자와 시민까지 망라한다. 아카이브 종사자와 시민도 대통령상징기록의 생산자가 된다. 전통적인 업무수행 과정뿐만 아니라, 아카이브의 아카이빙 과정, 공공기관 바깥에서 시민의 경험도 기록화 되어야 하는 사회적 맥락이다.

사회적 맥락을 기록화 하는 작업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록현장 만들기·기록현장기술서 작성하기”조합이다. 다른 하나는 “경험의 이야기형식인 내러티브기록”이다. 기록현장·기록현장기술서는 상징 중에서 좁은 의미의 현장, 의례, 의식에 초점이 가 있고, 내러티브기록은 상징 중에서 언어에 초점이 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논의를 위해 시도된다는 점에서 작위적인 면이 크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구분이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서로 섞일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작위적이나마 구분한 채 논의를 전개한다.

그런데 아무리 논의가 무성해도 실무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찌 하든 기록과 담론을 연결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화시키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단계를 노출시켜 논의주체로 삼아야 아카이빙 실무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기록현장기술서”와 “내러티브기록”을 단순화시켜 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화 전략을 살펴본다.

### 3) 기록현장-기록현장기술서

#### (1) 기록현장

현장에서 기록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있어 왔다. 1999년 이후만 보더라도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관리기준표, 대통령정리기술기술서 등이 그것이다. 이런 기록통제표-그물에 걸려야 기록으로 포획되고 관리될 수 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기록구성방식은 실제적인 방식이다. 맥락적인 방식에서는 사회적 맥락들을 각각의 기록현장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기록현장(archival field)’을 만드는 전략이다. 1999년 이후 기록분야에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 전에는 최종결과문서만 남았다면 이제부터는 시작부터 최종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레코드키퍼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기록현장전략에서는 현장이 없는 기록, 맥락이 없는 기록은 ‘의미가 없다’. 비유적으로 말해보자. 1999년 이전에는 결재문서 한 장이 남았고 1999년 이후에는 하나의 문서철이 남았다면, 상징프레임에서는 하나의 ‘기록현장’이 남는다.

앞서 인류학자 기어즈의 문제의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했다. 기어즈는 인류학자가 어떤 오지에 들어가 그 오지만을 연구하는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인류학자가 속한 도시의 지적인 기반, 도

덕적 기반도 같이 인류학자의 현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류학자는 오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직업적으로 공유하는 암묵적인 담론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록분야에서도 유사한 담론이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담론이 그렇다. 예를 들어, 케틀라르(Eric Ketelaar)의 암묵적 내러티브(Tacit Narrative)나 아키발라이제이션(archivalization) 개념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암묵적 내러티브나 아키발라이제이션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대의 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기록이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8)</sup>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기록이 기록일 수 있도록 작업한 아키비스트가 어떤 지적인 배경을 가졌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여 이러한 내용의 설명을 단 기록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아키비스트는 자신이 기록에 가한 해석적 틀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sup>29)</sup> 이것은 기록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식의 니힐리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자는 것을 함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적극적 의지에서 아키발라이제이션 같은 접근법도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석적 틀의 흔적’을 최대한 두텁게 남기면 될 것이 아닌가? 어쩌다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장애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실천이고 사회의 의무이다. 기록은 우리의 자식이자 사회의 자산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행동하면 된다.

그러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행동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기록이

---

28) Eric Ketelaar, “Tacit Narratives: The Meaning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Vol. 1, No.2, 2001, pp.131-141; 재인용 : 조민지, 「포스트모던 시대 기록의 정리와 기술」, 제24회 기록실버랩 콜로키움 발표문, 2012.

29) 조민지,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제27호, 2010, 89-118쪽.

생산되는 곳에는 그마다의 고유한 기록사회적 맥락이 있다. 두 개의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첫 번째는 ‘오지’를 기록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얼핏 생각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곳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국무회의 이전의 맥락은 논외로 치다면, 그 자리에는 발언이 있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있고 최종 결정통보를 알리는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녹음이 되고, 배석한 기록관 리비서관은 과정을 수첩에 메모하고, 끝난 후에는 대통령 자리에 놓인 기록을 수거한다. 녹음된 것은 녹취록 형태로 풀어진다. 이런 기록들이 합쳐져 대통령 행사기록이 구성된다. 이것으로 그친다면 국무회의 자리는 기록현장이 아직 아니다.

하워드 진이 말한 시위현장처럼, 국무회의에 흐르는 역동성, 대통령마다 보여주는 독특함과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되는 시대적 분위기, 국무회의 구성원들의 사회작용 등은 현재 대통령행사기록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나중에 그 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청하며 구술기록을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기록관 서고의 한 칸을 차지하는 것은 하워드 진이 말했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의 구술기록, 정태적일 수밖에 없는 구술기록일 것이다.

두 번째는 ‘도시’를 기록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록이 생산된다는 것은 업무시스템에서 기안되는 기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기록관 정리기술 작업장에서 만들어지는 정리기술서도 기록이다. 이 경우 기록사회적 맥락은 대통령기록관 정리기술실, 그 곳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아카이브 종사자와 이들을 통제하는 관리자, 자문하거나 실무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그들이 공유하는 암묵적 담론, 실무적인 기술(technology) 등이다. 아카이빙이 실무적으로 구성되는 곳을 기록현장으로 삼아야 한다. 하워드 진은 아카이브 커뮤니티 구성원이 아니었다. 구성원이 아니기에, 아카이빙이 진행되는 아카이브 내부의 커뮤니티 사

정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역사가와 아키비스트 사이에는 엄연한 경계가 있다. 그 경계를 구성하는 것은 각자가 처하고 있으며 발바닥으로 찍어야 하는 현장이다. 아카이브 밖에서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역사가라는 외부인이기에, 그러니까 아카이브 종사자가 아니라서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예를 들어 케틀라르처럼 경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를 말해야 한다.

케틀라르의 아키빌라이제이션, 암묵적 내러티브, 의미의 계보학 같은 논의는 특히 두 번째 기록현장을 겨냥한 것 같다. 이런 논의는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의 차원까지 스며들었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담론의 측면에서는 논의가 있어왔다. 예를 들어, 기록은 사실의 단순하고 우연한 결과물이 아니기에 어떤 문화적 요인이 기록될 만한 것인지, 레코드키퍼 이전에 작용하는 결정변수들은 무엇인지, 생산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적 무의식적 요인에 의해 선택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sup>30)</sup>, 기록 이전의 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기록화의 가치가 결정되는 ‘진실된 순간’이 오히려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한다는 주장,<sup>31)</sup> 아키비스트의 문화적 배경이 투영되는 과정은 결국 아키비스트의 문화적 배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sup>32)</sup>, 대략 이런 논의가 있었다. 물론 아카이브 내부로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아카이브가 고립된 섬이 아닌 바에야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논의들도 이런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본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문화적 요인들을 너무 사회 전체적으로만 볼 필

---

30) 이승역,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제6호, 2002, 41-72쪽.

31) 조민지, 앞의 글, 2011.

32) 노명환, 「기록/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커뮤니티 정체성 구성과 아키비스트의 역할」, 『한국외대 정보기록관리학과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2.

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푸코가 말한 ‘권력의 미시물리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아카이브 분야를 만들어가는 전문지식-산업-권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 하나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흔적을 남기기 위한 두터운 묘사에 대한 것이다. 말하자면 ‘기록현장기술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1960년대 효율담론은 기록통제표라는 장치를 통해 문서가 발생하는 순간마다 작동되었고, 문서생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동되었다. ‘기록현장기술서’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는 우리가 어떤 장치를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본격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대통령상징 기록을 말하면서 원론적 차원이지만 이에 대해 조금 언급한다.

## (2) 기록현장기술서

현재 대통령기록 중에는 ‘기록관리비서관 메모수첩’이 있다.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비서관은 대통령행사에 배석해서 회의상황을 수첩에 메모했는데, 이는 나중에 속기사가 녹취록을 만들 때에도 활용했고, 기록비서관 본인이 속기사의 녹취록 초안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때도 활용했다. 속기사는 회의현장에 없었다. 따라서 녹취를 풀다보면 녹음파일만 듣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발언할 때 누구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발언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회의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메모수첩을 참조할 경우 회의내용을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법적 규정에 의해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최종적으로 회의록 형태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외에도 녹음파일, 녹취록, 회의결과 보고서 등이 대통령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기록비서관의 메모수첩은 대통령회의 그 자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법적



인 의미에서 반드시 남겨야 하는 대통령회의기록으로 규정되기도 어렵다. 우선은 메모수첩이 없더라도 녹취록 형태로 회의록이 남아 있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었는지를 아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나 대통령기구의 직무수행을 이해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이다. 기록관리비서관의 메모수첩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업무노트와 유사하고, 이런 업무노트는 강제로 이관해야 하는 기록으로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수첩은 중요기록으로 취급되어 임기 말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메모수첩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메모수첩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는 청와대 내부에서 회의록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록이고, 둘째는 메모수첩을 통해 회의내용 그 자체보다는 회의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기록이다. 전자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최종 회의록이 작성된 이후에는 남겨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메모수첩 말고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회의 전이나 회의 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회의마다 어떤 독특함이 있는지, 회의참석자와 대통령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이런 의례와 의식, 비언어적 언어가 회의록에는 없다. ‘7%’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발바닥행동 프로젝트에서 나온 기록현장기술서의 일부이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발바닥행동에서는 아주 일반적이다. 학생인 우리들이 어른을 대할 땐 예우존칭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약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하면 모르는 척을 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름만을 부를 것을 요청하셨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발바닥행동 조

직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곳에서는 누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런 직책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sup>33)</sup>

“처음 마주했을 때의 이미지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밝음보다 밝은 기운이 그들에게 넘쳤다. 그것은 기가 세다고 하기에 좀 더 부드럽고, 부드러운 안개 속에 인생의 노하우를 가진 무언가 있을 것만 같은 긴장감을 주는 밝음이었다. 항상 두 톤 정도는 높은 목소리의 인사와 세 톤은 높은 카랑카랑한 웃음, 조금은 더 과장된 손짓, 가시는 없지만 세련된 농담을 담은 말투 등이 그 속에 녹아 있었다.”<sup>34)</sup>

발바닥행동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상징프레임 하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발바닥행동 프로젝트의 기술서에는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정리기록지침’이 요구하는 표준적인 기록기술서도 있지만, 여러 형태의 기록현장기술서도 나왔다. 객체적 사물로서 기록은 기록기술서에 담겼지만, 사건과 문화는 기록현장기술서에 담겼다. 다만, 발바닥행동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 중이고 하나의 작은 사례에 불과하기에 대안적 논의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은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아키비스트의 언어와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다르다.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어투, 표정, 몸짓에 따라 그 의미전달은 천차만별이다. 공동체만이 알고 있는 그들만의 언어와 몸짓이 있다. 아키비스트는 그것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발바닥행동에서 ‘밝음’을 보았다. ‘밝음 이상의 밝음’을 가진

33)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기록정리기술프로젝트(중간보고서)』, 2012.

34) 위의 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소 과격했지만 그 표현을 통해 서로를 동지(동무)로 여기고 가족에 준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발바닥은 인권단체로 일반회사의 동료들이 가지는 동료애와는 좀 다른 그들만의 애(愛)를 갖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활동(인권운동, 시위, 시설조사 등)을 겪으면서 그들 안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 언어 속에는 공동체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무엇이 있다. 아키비스트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해야 한다.”<sup>35)</sup>

이 글은 발바닥행동 프로젝트에서 ‘밝음의 현장기술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그 후 회상형식으로 다시 쓴 글이다.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 아키비스트가 언어를 아카이빙하려면 해당 공동체의 독특한 언어를 포착할 수 있고 그것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독특한 언어는 단순히 몇 가지 단어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구분 짓는 경계 역할을 한다. 앞서 코헨의 상징을 이야기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언어실천에서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이런 점이 아닐까 싶다. 어떻게 경계를 지을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독특한 언어를 포착하여 현장기술서에 적절히 담아낼 것인가? 이런 종류의 현장기술서는 아키비스트가 실체가 아닌 맥락에 초점을 둘 때 나올 수 있는 기록일 것 같다.

상징프레임의 시선으로 본다면, 사물(things)로서 회의록은 남아 있지만, 사건(happenings)으로서 상징은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 기록이 남았으니 우리는 참석자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고 어떤 정책을 논의했는지 내용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회의라는 대통령기록 현장(presidential archives field)의 의례와 상징은 소멸되었다. 앞서 비유적으로 영화미소의 기록화에 대해 언급했지만,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는 한 상징은 소멸한다. 코헨에 따르면,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의례와 상징

---

35) 위의 글.

을 통해 문화적으로 경험하는데 이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노동자 문화를 연구한 영국 역사가 톰슨(E.P Thomson)이 영국 노동계급을 분석할 때도 같은 맥락에서 노동조합 보고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독특한 의례와 의식이었다.<sup>36)</sup> ‘대통령 커뮤니티라는 특수하고 일시적인, 그러나 반복되는 장소’에 대한 문화적 경험을 기록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인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장소, 회의 등을 ‘기록현장(archives field)’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기록현장기술서(archives field description)’를 생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현장기술서는 기록인류학적 참여관찰기록이다. 참여관찰은 일회성 회의참석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정기간 동안 참여해서 정밀하게, 두텁게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회의록 작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된다. 물론 그럴 소지가 충분하다.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지난 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회의록이 아니라, 기록현장에서 생산하는 기록현장기술서는 지속적인 참여관찰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류학의 참여관찰방법론을 폭넓게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양적 기록방법론으로는 의례와 의식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겠지만, 상징을 텍스트로 만드는 방법론이 풍부한 인류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질적 기록방법론은 다를 것이다. 의례-의식, 언어 등의 대통령상징을 기록화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전자기록 관리를 위해 IT를 수용해야 했듯이, 상징 기록화를 위해서는 인류학 방법론을 수용해야 한다.

인력, 기록화대상, 방식에 대한 것을 좀 더 논의해보자. 첫째, 인력은 임기 중 대통령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기록현장기술서를 작성할 아키비스트를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별도의 기록인력을 배치하는 사례로는

---

36) 윤은하, 앞의 글, 2011.

역사적 평가를 하기 위해 전문역사가를 일정기간 훈련해 평가전문 아키비스트로 채용하는 독일사례, 동영상 제작을 위해 영화감독을 채용했던 국가기록원 사례가 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는 ‘필름메이킹’ 방식도 참조할 만하다. 채용형식은 대통령기록관에서 파견하는 형식이나 청와대에서 채용하는 형식, 모두 가능하겠지만, 전자가 안정적인 것 같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때에 모두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직원이 파견된 전례가 있다. 적극적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차제에 ‘기록인류학자(Anthropological Archivist)’에 대한 논의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둘째, 기록화 대상은 대통령공식행사, 그리고 일부 비공개행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24시간 내내 대통령을 밀착하면서 관찰할 수도 없고, 모든 회의, 해외순방 등에 따라갈 수도 없다. 그러나 국무회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부처업무보고, 청와대 밖의 공개된 대통령행사 등 주요 대통령행사에는 배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는 비서관 또는 행정관이 번갈아 대통령행사에 배석해 기록화를 담당했던 사례가 있다.

셋째,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정기적으로 어떤 회의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회의인지 통보한다. 그러나 대통령상징기록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회의가 기록화대상인가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보다 심층적으로 그 회의를 어떻게 아카이브 현장을 만들 것인가, 각 회의마다 어떤 종류의 ‘현장기술서’가 필요한가를 모색해야 한다. 참여정부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하는 기법에 대한 업무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는 ‘오지’에 대해 설명했다. ‘도시’는 아카이빙 실무과정과 실무과정이 전개되는 장소이다. 구체적으로는 퇴임 6개월 전 대통령기록기관작업이나 이관 후 5년 동안 진행되는 정리기술 등과 같은 실무과정

등이나 대통령정리기술실 등의 장소가 기록화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는다.

이제 논의를 정리한다. 기록비서관 메모수첩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물론 기록비서관 메모수첩의 취지는 대통령상징기록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적행위 기록화에 있었다. 따라서 전자의 요소가 일부 있긴 하지만 대통령상징기록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대통령상징기록의 맥락에서 보면 메모수첩은 주변부 기록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상징기록이라는 명확한 범주와 전통적인 기록학적 접근과 인류학적 방법론을 접목한 기록현장기술서 방법론이 마련된다면 어떨까? 기록현장기술서는 독립된 대통령기록이 될 것이고, 시대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객체적 사물로서 기록은 아니지만 기록현장기술서도 하나의 기록이다. 기록현장기술서는 맥락, 현장의 고유하고 독특한 분위기, 참가한 아키비스트의 경험과 열망 등을 담아낸다. 기록현장기술서는 객체적 기록을 수집한 후에 기록관 내부에서 수행하는 정리기술서와는 차원이 다르다. 기록을 보다 포괄적으로 잡아나가면서 기록의 층위를 넓힐 때 현장기술서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 4) 내러티브기록

##### (1) 내러티브기록과 대통령이야기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핵심적인 문화이다. “경험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살아가며,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재확인하고 수정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sup>37)</sup> 이

---

37) D. Jean Clandinin, *Narrative Inquiry*, 2006.

러한 관점에서 보면, 체험되고 말해진 이야기는 우리를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 기록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아니, 오히려 기록은 인간의 근원적 탐구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경험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객체적 사물로서 기록이 우리 사회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이야기도 기록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경험은 ‘체험, 기억, 심리 등과 같은 인간의 내면적 정신 작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험은 이야기형식으로 구성되어야 사회적 경험으로 변한다. 마치 전자기록의 기록화 과정처럼, 이야기형식은 경험에 대한 보존포맷이나 메타데이터 역할을 한다. 경험은 이야기 같은 언표화를 통해서만 사회적 경험이 된다. 이것은 접근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기록의 접근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은 이런 기록화 과정의 적절성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서로서로가 또는 집단적으로 접근가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표화-이야기형식이다. 이것을 기록학적 맥락에서는 내러티브기록(narrative archives)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시민의 대통령경험’을 이야기로 만든 “대통령이야기”이다. 대통령이야기는 ‘대통령이 공통의 경험이 되는 이야기’이다. 사실 모든 개별적인 사람들을 모두 기록화 할 수는 없다. 물리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 차지하는 위상이 남다르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차차 논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을 공통의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이다. 요컨대, 대통령 경험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경험에 속할 것이다.

현재, 구술아카이브 분야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는 것을 꼽자면 역시 ‘아우슈비츠 경험’일 것이다. 그런데 아우슈비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

일까? “박물관, 전시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생존자의 이야기이다. 물리적 장소와 함께 생존자, 가해자, 다소 동조적인 방관자라는 세 그룹의 증언은 클로드 란츠만의 1985년 영화 ‘쇼아’의 핵심을 이룬다.”<sup>38)</sup> 아우슈비츠를 공통의 경험으로 하는 내러티브가 ‘아우슈비츠 아카이브’를 구성했고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듯이, “대통령이 공통의 경험이 되는 이야기”가 모인 아카이브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아우슈비츠 이야기라고 해서 아우슈비츠 안에서만 있었던 사건경험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고, 나아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방관자, 가해자, 피해자-생존자 후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대통령을 공통의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방대한 양이 남아 있는 조선왕조실록에는 왕과 조정대신의 말과 언행은 있지만, 일반 백성이 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후자의 중요성이 전자에 비해 낮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 주권재민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왕조실록은 반쪽짜리 기록이며 시대를 읽을 수 없는 기록이다. 지금은 왕보다는 그 왕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승만대통령 경험이 있는가? 박정희대통령 경험이 있는가? 이승만대통령이 지시한 문서는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이승만대통령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대통령기록에는 없다. 한국전쟁 중에 서울은 사수하겠다는 떨리는 음성이 방송으로 나갔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인 한 둘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38) Dominick LaCapra, 육영수 외 옮김, 『치유의 역사학으로』, 푸른역사, 2007.



사람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대통령 이야기가 있는지도 중요할 뿐더러, 기록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승만대통령이나 박정희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이야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는 사람들의 특정한 아무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대한 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의 대통령 이야기가 지금 대통령기록에는 없다. 물론 역대대통령의 자서전이나 정치적 팜플릿 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는 없지 않은가? 아우슈비츠 경험이란 몇 년 동안의 수용소 경험이 아니라 그 특수한 경험이 한 인간, 집단, 사회의 경험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상호작용의 존재이다. 대통령이 있었다면 대통령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았던 맥락이 있다. 그것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지금으로선 사람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이야기 속에 포함시켜 공유하고 교류하는지 알 수 없다. 물론 다양한 형태로 대통령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그것도 거의 대부분 웹이나 미디어, 정당의 목소리에 들어 있다. 시민의 진솔한 이야기는 아카이브에는 없다. 아카이브는 후세에 기록을 남기는 최종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아카이브에 없으면 요컨대 대통령기록은 후세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삶과 대통령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면 몇 십 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0세기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정조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정조와 조정대신들이 생각하는 백성들의 생각은 있지만, 백성들이 실제로 정조를 어떤 이야기로 구성했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대통령

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대통령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2) 대통령이야기 기록화 방식

대통령이야기 기록화 방식에는 몇 개의 유형이 있을 것이다. 구술인터뷰 형식, 대화형식, 이야기워크숍 형식 등이 그것이다.

### ① 구술인터뷰 형식

구술인터뷰 형식으로는 현재 구술채록사업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구술채록사업은 대통령 공적행위를 수행한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몇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결락기록을 보완하는 보조적 지위에서 진행된다. 둘째, 대상이 제한적이다. 셋째, 플롯이 다양하지 못하다. 사실 이 세 가지 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결락기록의 보완이라는 점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질문이나 방식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내러티브의 핵심인 플롯도 극히 제한적이고 단조롭다. 한마디로 즉흥성이 없고 다양하지 못하다. 물론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술기록 프로젝트는 확대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프레임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확장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프레임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둘째, 대상은 현재의 대통령과 가족, 고위 공직자 위주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일반 직원, 국정과 상관이 없었던 시민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질문지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즉흥적일 필요가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어떤 정보를 채취한다기보다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것을 전망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의 대화형식과 이야기워크

크숍 형식에서 다룬다. 한편, 구술은 그 자체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유한 방법론과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아카이브 영역 안에서 진행되는 구술에 국한된다.

대화형식과 이야기워크숍 형식은 아카이브 영역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 같다. 두 가지 형식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 ② 대화형식: StoryCorps Project 방식

StoryCorps Project는 이야기 프로젝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대통령이야기 프로젝트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뉴욕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StoryCorps Project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StoryCorps Project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하고 보존하는 일을 한다.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 사람 이야기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만큼 재미있고 중요하다. 둘째,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지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치 있으며 쉽게 잊혀 지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며 이것을 이야기로 나누고 싶어 한다. 넷째, 경청은 사랑의 한 행위이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동시대 사람들과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려는 것이다.

StoryCorps Project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누군가와 녹음실을 방문하면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목사님, 선생님 등 특정한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누구든 상관없다. 이들이 방문하면 담당 직원이 녹음실로 안내하고 문을 닫는다. 녹음실은 조용하고 편하며 조명이 은은하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 모든 이야기는 녹음된다.

녹음된 음성파일은 CD 2장에 수록된다. 한 장은 당사자에게 주고 한 장은 미의회도서관으로 보낸다. StoryCorps Project에서 의회도서관으로 이야기를 보내게 된 것은 일정한 역사적 연원이 있다. 1930~40년대 미국 전역에서는 많은 인터뷰 작업이 있었는데 이때 인터뷰 기록이 의회도서관 민중생활센터에 보관되어 있다. StoryCorps Project는 이런 역사적 흐름을 잇겠다는 의지에서 의회도서관에 이야기를 보내는 것이다.

음성파일은 StoryCorps 웹페이지에 올려지고, 매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국립라디오방송인 NPR을 통해 방송이 된다. 의회도서관에 CD를 보내는 것이 후세에 지금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의미가 크다면 NPR을 통해 방송이 되는 것은 동시대 사람들과 공유를 한다는 의미가 크다.

마음은 있으나 녹음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StoryCorps Project는 이들에게 녹음실에 오지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녹음해서 보내라고 권한다. StoryCorps Project는 녹음하는 방식,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조언해준다.

먼저,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은 10단계를 거친다.

- (1) 누구와 대화를 나눌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한다.
- (2) 대화를 나누고 싶은 내용을 질문형식으로 만든다. 물론 앵무새처럼 미리 준비한 질문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저 시작을 위한 방편이다.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 (3) 녹음기를 준비한다.
- (4) 조용한 장소를 선정한다. 침실이나 부엌도 좋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편안해야 한다.
- (5) 녹음기를 사전에 테스트한다. 대화를 나눌 때는 대화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조작을 여러 번 해서 막상 녹음에 들어갔을 때는 녹음기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6)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먼저 이름, 나이, 날짜, 장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말한다.

(7) 진지하고 흥미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열심히 듣고, 마이크가 아닌 대화상대의 눈을 보고,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떡인다. 감정에 솔직한 것이 좋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웃고 슬픈 이야기는 함께 슬퍼하는 것이 좋다. 흥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더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심화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흥미와 관심을 보이면 평범한 사람의 위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8) 대화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에게 더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한다. 카메라가 있으면 같이 사진을 한 장 찍는다.

(9)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한다. 물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선은 가족친지 친구, 모임 등에서 공유한다. 사람들을 초청해 같이 들으며 모임을 갖는 것도 좋다.

(10)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교재 등으로도 활용한다. StoryCorps Project에 보내거나 학교 역사수업 시간 등에서 활용한다.

StoryCorps Project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oryCorps Project는 2003년 10월 23일,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Grand Central Terminal)에 녹음실을 설치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당시 개관식에 참석한 한 역사가는 다음과 같은 축사를 했다. “지금 우리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건축물에 익숙하고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나 누가 저 벽돌을 쌓았으며 누가 저 창문을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StoryCorps 녹음실에 오는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은 할머니와 손자 간의 이야기일 수 있고, 이웃 간에 나누는 이야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말하자면 StoryCorps Project는 평범한 사람

들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이를 통해 오래되었지만 단절된 이야기 전통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2005년 7월에는 뉴욕 세계무역센터 근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 녹음실을 두었다. StoryCorps Project는 이곳에서 911 사건의 생존자와 유가족, 구조대원들의 이야기를 수집했다. 이 기록들은 세계무역센터 기념관에 기증되었다. StoryCorps Project는 그 후 3대의 녹음 트레일러를 마련해 전국을 누리면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StoryCorps Project는 이야기프로젝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모든 대화는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다. 40분 동안 가까이 앉아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또 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인정과 용기는 미국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족과 친구,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좀 덜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갖는 전통적 의미를 다시 알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말하자면, StoryCorps 녹음실에서 한 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문화이지만, 그것이 동시대 사람들과 공유가 된다는 점도 의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StoryCorps Project를 소개했다.<sup>39)</sup>

### ③ 이야기워크숍 형식 : Herstory Workshop 방식

Herstory Workshop은 비영리단체로 1996년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Herstory Workshop은 여성들을 위한 이야기워크숍이다. 전문직 여성, 전업주부, 약간의 정규교육을 받은 여성, 고학력 여성, 전혀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다. 문화적 배경은 물론이고 연령대도 다양하다. 흑인, 중남미 사람, 아시아

---

39) Dave Isay, *Listening is an Act of Love*, Penguin Books, 2007.

사람, 백인 등 인종도 다양하다. 롱아일랜드 지역에는 중남미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산다. 대부분 가난하다. 이들을 위해 영어와 스페인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Herstory Workshop은 자체 사무실도 있고 그 곳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지역 내 도서관, 학교, 복지시설 등과도 연계해서 같이 진행한다. Herstory Workshop이 처음 진행된 곳은 인근에 있는 Stony Brook 대학이었다. 이 대학은 뉴욕주립대학 중 하나이다.

모임형식은 단순하다. 대체로 10명 내외의 사람들(더 적게 모일 때도 있다)이 모여 써온 글을 읽고는 대화를 나눈다. 글은 에세이, 역사, 소설 등 여러 형태로 쓰여 진다. 특별히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글쓰기 교실에서 하는 것처럼 문장을 고치거나 새로 쓰도록 조언을 하거나 하지도 않는다. 누구나 써온 글을 그대로 존중한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이 된다. 이때 길게 한 권의 책 분량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짧게 쓰는 사람도 있다.

Herstory Workshop은 교도소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같은 지역에 있는 여성교도소에서 여성재소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이 여성들의 경우 글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다. 기초적인 철자법이 틀리는 경우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정기적으로 간행물로 나온다. 이때조차도 글에 손을 대지 않는다. “편집하면서 우리는 아주 작은 철자, 구두점 등만을 편집했습니다. 문법, 어휘선택, 문장구조 등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가한 사람들의 독창적인 목소리와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Herstory Workshop의 기본 정신은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진짜 사회적 경험이 된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약 2천 여 명의 사람들이 Herstory Workshop에 참여했다.

Herstory Workshop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재정적 후원을 받는다. 지원을 하는 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지원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직접적인 혜택입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여성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가서도 자기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안전하게, 후원과 지지를 받으며, 자기 이야기를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Herstory Workshop에 기금을 지원하는 일은 무척 보람된 일입니다.”

Herstory Workshop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평가도 비슷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웁니다. 물론 우리는 글을 쓰는 법도 배우고, 이야기를 하는 법도 배우고, 경청하는 법도 배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곳에서 같이 작업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차츰 익숙해지면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 평가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Herstory Workshop 같은 이야기 워크숍은 공유할 수 있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 그리고 치유와 변화 등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실인 셈이다. 변화는 새로운 직업기술을 배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온다. 폭력과 고통 속에서도 창조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종래는 자신에게서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상 Herstory Workshop를 소개했다.<sup>40)</sup>

## 5) 시사점

대통령이야기는 왜 아닌가? 대통령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럴

---

40) Erika Duncan, “Paper Stranger: Shaping Stories in Community”, Herstory Writers Workshop, 2008.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기록관에 녹음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녹음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버스를 녹음실로 개조해 전국을 다니며 대통령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녹음실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의 정신은 공과를 모두 기록하고, 평가는 후세에 맡긴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이야기워크숍을 운영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도 있다. 물론 위에서 소개한 허스토리 워크숍과는 다른 점도 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워크숍 프로그램에 넣는다면 좋을 것이다. 열람실에서 단순히 기록만 이용하거나 전시실에서 전시내러티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혼용된 새로운 이야기워크숍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워크숍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대통령기록관의 장점이 될 것이다.

내러티브기록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 말한다.

첫째, 이것은 추억담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다. 정파의 정치 팸플릿을 모으자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대통령이야기’이다. 대통령마다 호불호가 있고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 이야기가,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억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아카이브에서 ‘대통령상징기록’으로 담는 대통령이야기 프로젝트라면 이런 현상적이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둘째, 대통령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와 접목되어야 한다. 쉬여야 한다. 만약 대통령을 비판한다면 자신의 삶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기에 그러한가, ... 특히, 자기 이야기가 제외된 채 사회비판의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셋째, 공동작업이 되어야 한다. 백일장 형식이나 수기모집 방식은 안 된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가 아니다. 워크숍 형식으로 공동작업을 하면서 대통령경험을 나누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소

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대통령 경험을 서로 경험하고 공유하고, 이를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치유와 통합의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잘 부합한다.

넷째, 사실이 아닌 서사성에 주목해야 한다. 내러티브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서사성이다. 진본성이나 원본성, 공공기관에서 생산해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평가론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 도대체 그것을 누가 정했는가? 특히나 대통령기록관은 앞서 비유적으로 들었던 ‘반쪽짜리 조선왕조실록’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내러티브기록은 무엇보다도 공적행위 프레임에 갇힌 기록(사실이어야 하고, 엄밀해야 하고, 증언이 되어야 한다, 등)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단순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StoryCorps Project 방식이나 허스토리 워크숍 방식처럼 단순하게,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둔탁한’구술인터뷰에 비한다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것이다. 즉흥성과 다양성은 이런 단순함과 개방성에서 온다. 대통령 이야기는 StoryCorps Project나 허스토리 워크숍이 지향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실들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상 몇 개의 원칙을 말했다. 다음은 대통령기록관의 역할이자 사명에 대해 말해본다.

대통령이야기는 통합대통령기록관이든 개별대통령기록관이든, 아직 대통령기록관이라 말하기 어려운 기념관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관’이 문화의 차원, 특히 언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아카이빙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야기 프로젝트를 만약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그 누군가 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대통령기록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

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법 제2조 2항). 이런 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는 국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는 대통령기록의 최종 보관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를 위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통령기록관에 부여한 것이다. 이런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새로운 역할을 자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대통령기록은 어떤가? 현재 대통령기록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기구의 공적 기록이 남아 있고 결락보완의 차원에서 구술채록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기록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상징을 기록화 하는 데까지 미쳐야 한다. 기록의 정의, 대상,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표상, 대통령이라는 시민의 열망, 대통령으로 표상될 수 있는 시대적 흐름, ...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이제는 문화의 시선으로 대통령상징기록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을 행정과 효율의 프레임에서 꺼내 보다 큰 프레임에 배치하는 작업이기도 할 것이다.

사회적 경험, 사회적 행위는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 구성의 적극적 역할은 대통령기록관의 몫이다. 대통령기록을 이야기 할 때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노무현대통령기록 말고는 제대로 된 대통령기록이 없다는 말을 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행위 프레임에서는 가능한 시각이지만, 행위-경험 프레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시각이다. 임기가 끝이 나고 임기 중의 공적 기록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지만, 대통령상징을 기록화 하는 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대통령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기록화를 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6. 문화의 차원에서 보는 기록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대통령기록의 정의 및 수집대상을 분석해서 대통령기록에 대한 새로운 접근전략을 마련해보고자 했다. 현행 대통령기록의 정의 및 수집대상은 2007년에 대통령기록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났다.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기록 환경, 연관된 분야의 환경,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문화적 환경도 바뀌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는 대통령기록의 정의 및 수집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하며 이 경우 대안적 논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뤄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현행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공적 기록”, “대통령상징기록”로 세분화하면서 대통령기록을 새롭게 구성해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화 전략도 함께 제시해보았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문화의 차원에서 기록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1999년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 10여 년의 변화를 다시 성찰해보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이런 논의는 물론 시의적절하고 유효하기에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식 중에는 더 멀리,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해나가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보다 심층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의 논의 중에는 ‘새로운 아카이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논의를 하려면 보다 심층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화의 차원에서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카이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제는 양적 방법론이 아닌 새로운 차원에서 아카이브 분

야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곁에는 이미 새로운 실험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포스트모더니즘 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브, 민속기록학, 기록과 기억의 실천 등이 전개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은 현장에서의 실천과 담론작업을 병행하면서 활발하게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여러 갈래의 흐름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방법론은 저절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류학 등에서 차용하기만 할 수는 없겠기에 이제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야 한다. 이런 작업은 아마도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이론화 작업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제도권 공공분야의 분발을 촉구한다. 방법론의 차원에서 보면, 공공분야에서는 아직 새로운 실험이 없어 보인다. 낯설겠지만 공공분야에서도 법제적 차원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 기록을 놓는 실험을 해야 한다. 기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술채록이 아니라 그 토양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적 맥락의 구술아카이빙’을 공공기관에서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공공아카이브도 문화기관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 행위에서는 어떠했을까? 공공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용할 경우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이나 비공공분야의 다양한 실험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류협력이 공공분야의 토양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공공영역 중에서는 얼핏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기록 분야가 오히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첨언할 것이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아카이빙의 주된 프레임인 공적 행위 프레임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전히 한국사회는 공적 행위의 증거들이 제대로 남지 못하는 실정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적 행위 프레임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반론이 제기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런 반론은 한국사회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만 볼 수 없을 정도로 ‘봉건적, 근대적, 탈근대적 양상들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본다. 특히나 기록학과 시민사회 등에서 여러 번의 성명서를 낼 정도로 심각하다 할 수 있는 2008년 이후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 글에는 한국사회의 복잡성과 2008년 이후 시의성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의도와는 무관하게 공적 행위 프레임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게 되었던 것은, 상징아카이빙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전개했던 논문기술상의 맥락을 우선 말하고 싶다. 요컨대, 공적 행위 프레임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카이빙을 해야 할 영역이 넓지 않은가? 공적 행위 프레임의 본질적 문제보다는 굳이 말한다면 ‘용량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한계점을 전제로 이 글은 아카이빙의 역사적 흐름과 그 맥락에서 전반적인 추세를 보려고 했다. 그래야 공적 행위 프레임 자체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을뿐더러 새로운 프레임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상으로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상징아카이빙 이야기를 마친다.

## ABSTRACT

### Metaphor and Archives

Lee, Young-Nam

This essay would focus on a kinds of new archival strategy. The main frame has been the kinds of activities regulated by laws, or formal activities since 1999. In the case of presidential archives has no another frame. There had never kinds of presidential archives system until President Noh, if anything. It means that the frame has some important points. Although it is, we have to say about the limits of the frame. This essay show 'metaphor frame' for archival system. I think that we have to guess there are methodologies below the two frames. One is quantitative study methodology, and another i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e later focuses on the experiences for making narratives. We have to know that this methodology is out of fashioned in the field of history department and cultural anthropology department for the purpose of alternative studies. This essay says about 'archival field description' and 'narrative records' for the new records in archival field. I have to say about that we needs to discuss about kinds of new archival discours. And to conclude, we should manage the records in culture.

**Key words** : presidential archives, paradime, discourse, archival field description, ISAD(G), community archives, symbol, metaphor

